

재혼가족의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김 연 옥

(서울시립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재혼가족을 경계라는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재혼가족의 모 125표본을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재혼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79.2%, 남성배우자의 74.2%의 전혼해체사유가 이혼으로서 '이혼 후 재혼'이 재혼의 보편적 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이 남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보다 앞선 조사결과를 통해 재혼의 사회문화적 태도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일치여부로 측정된 가족경계모호성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67.6%가 경계모호성이 없는 반면, 32.4%가 심리적, 육체적, 혹은 양쪽 모두의 경계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주제어: 가족경계모호성, 가족기능, 재혼특성, 심리적 모호성, 육체적 모호성

1.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족과 관련한 가장 현저한 변화중의 하나는 재혼가족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초혼가족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혼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는 천명당 이혼율이 OECD국가 평균과 아시아 주요 4개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OECD, 2009)¹⁾. 이혼율의 상승은 바로 재혼율의

* 이 연구는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2007년 천명당 이혼율은 우리나라가 2.5명, OECD 국가평균은 1.7~2.3명, 아시아 주요 4개국 평균은 0.9~2.0으로 집계되었다(OECD, 2009).

상승을 의미하여, 2010년에는 전체 혼인의 21.9%가 재혼²⁾이었으며,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6.1세, 여자 41.6세로 2000년대에 들어와 남녀 모두의 재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년기 재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통계청, 2011).

재혼은 그 숫자적 증가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특히 사회복지적 관심을 끄는 것은 재혼의 높은 해체율 때문이다. 많은 관련 통계자료들은 재혼이 초혼에 비해 해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tional Healthy Marriage Resource Center(2009)의 발표에 따르면, 결혼 5년만에 이혼하는 비율이 초혼부부가 20%인 반면, 재혼부부는 25%로서 초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첫 번째 재혼의 이혼율은 60%에 이르며, 두 번째 재혼은 그 보다 높은 73%로 나타났다(U.S. Bureau of the Census, 2006).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자료(2012)에 의하면 재혼부부의 이혼상담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로서, 재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상담 건수가 2010년의 9.1%에서 2011년에는 10.0%로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혼부부의 재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심각성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재혼의 해체율이 이처럼 높은 것일까? 많은 연구들은 재혼가족의 본질적 특성 자체에 재혼의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혼은 초혼과는 판이하게 다른 조건들, 즉 배우자의 전혼경력과 계자녀의 존재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하며, 이러한 특성이 재혼을 ‘엄청나게 복잡한 현상’으로 만든다(White and Booth, 1985). 부부관계보다 먼저 형성된 부모-자녀관계, 가족생활주기와 개인생활주기의 불일치, 두 부모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자녀의 충성심 갈등, 복잡한 친족관계 등 재혼가족의 다양한 특성이 재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혼가족의 이와 같은 복잡성과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경계유지의 이슈로 귀결된다(Messinger, 1976). 재혼가족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족을 구성하는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가족경계는 재혼가족의 보편적 특성이다(Whitsett and Land, 1992). 또한 그것은 가족별로 서로 다른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Jacobson, 1987), ‘함께 사는 것’이 경계유지의 주요 요건임에 비해 재혼가족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언제나 갖춰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Walker and Messinger, 1979). 재혼가족의 경우, 동거동재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가족경계를 느슨하게 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통합성 유지를 위해 경계를 단단하게 해야 하기도 하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경계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재혼가족의 이러한 가족경계의 문제는 가족형성과 가족구성원 개인의 기능을 방해하는 등 재혼가족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Fast and Cain, 1966; Whitsett and Land, 1992; Banker and Gaertner, 1998; Fine, Coleman, and Ganong, 1998; Madden-Derdich, Leonard, and Christopher, 1999). 경계의 불명료함은 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초래하고, 또한 계부모와 자녀간의 그리고 부부간의 유대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utz, 1983).

2) 1995년 13.4%였던 재혼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25.3%까지 상승하였다. 그 후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 속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21.9%로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2002년 이후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재혼연령은 2000년 남녀 각각 42.0세, 37.4세, 2005년 남 44.1세, 여 39.6세로 높아지는 추세가 2010년까지 지속되고 있다(2011. 통계청).

Stewart(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경계모호성이 재혼가족의 배우자간 관계의 질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처럼 일찍부터 경계의 문제가 재혼가족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연구가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재혼가족의 주요 연구주제로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혼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비로소 시작되었고, 연구 건수 또한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연구들 대부분은 재혼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스트레스나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혼생활과 재혼가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의 좀 더 세부적 주제를 살펴보면 재혼모의 역할수행 어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임춘희, 1996; 임춘희·정옥분, 1997; 김연옥, 1999; 2002), 재혼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문제(손병덕, 2005; 김효순, 2006; 김효순·엄명용, 2006; 김효순·하춘광, 2010; 2011), 재혼가족 관계나 가족적응(김효순, 2005; 김효순, 2006; 박태영·김태한, 2010) 등이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재혼가족들을 대상으로 적응, 스트레스, 역할혼란 등 재혼생활의 문제점, 즉 가족기능에 초점을 두었고, 경계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는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재혼가족의 경계문제를 연구내용의 일부로나마 거론한 것은 김효순(2005)과 김연옥(2007)의 연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효순(2005)³⁾는 재혼가족의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서 가족경계모호성이 재혼가족의 가족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김연옥(2007)의 질적 연구는 해체된 재혼가족의 특성을 분석하였는 바, 경계의 모호함이 해체된 재혼가족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로 밝혀내었다.

우리사회의 재혼율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재혼의 취약성은 결혼해체 위험성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것은 바로 가족해체라는 사회문제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족 문제의 근원에 위치한 경계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재혼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경계모호성과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물론, 재혼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재혼과 재혼가족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혼가족의 기능수준과 경계모호성의 수준을 확인한 후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2. 이론적 검토

1) 가족경계와 경계모호성

가족체계이론에서 나온 개념인 가족경계란 체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테두리를 가리키며 가족원

3) 가족경계모호성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불명확함과 그로 인한 역할혼란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서구사회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누가 가족구성원인가'에 대한 인식불일치를 측정한 반면, 김효순(2005)의 연구는 역할혼란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다.

간의 접촉 유형이나 접촉의 양을 규제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이다(Minuchin, 1974; Gehart and Tuttle, 2003). 따라서 경계란 체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즉 누가, 언제, 어떻게 참여하는가와 체계의 규칙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Pasley and Ihinger-Tallman, 1989). 가족경계는 가족들을 성, 이해관계, 관심, 세대 등에 따라 구별하고, 체계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관계의 규칙, 상·하위체계의 역할 수행 등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 가족경계의 명료성을 드러내게 된다.

가족은 성원들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역동적 체계로서 각기 다른 체계의 규칙과 역할이 그 체계내에서 그리고 체계간 적절히 수행될 때 가족 전체가 기능적인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가족경계와 밀접히 관련된다. 가족경계가 경직되거나 혼돈되어 있으면 필요한 상호작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경계를 넘어서서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와 위계질서가 발전하면서 가족 성원들의 역할수행에 혼란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역할의 혼란은 가족 역기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경계 모호성이란 가족체계 안에 구성원으로 누가 포함되었는지, 또 누가 어떤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이 불분명한 것을 의미하는(Boss, 1980a; Boss and Greenberg, 1984) 것으로, 가족경계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oss(1980b)는 누가 가족인가에 관한 개인과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은 가족 체계 내의, 그리고 체계와 외부세상과의 상호작용의 성격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합의, 즉 가족구성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하면 가족생활에 필요한 역할과 규칙이 발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합의는 선결될 과제라고 하였다(Boss, 1980b).

가족경계는 가족체계의 정체감, 즉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구별하고, 또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족을 구별하는 인식을 키워주는 것으로,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육체적 실재여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존재여부까지도 포함한다(Boss, 1980a). 예컨대 이혼, 실종 등의 이유로 인해 육체적으로 부재할지라도 가족들이 여전히 가족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가족경계모호성은 흔히 가족성원의 정신적, 육체적 부재와 실재에 관한 일치여부로 조작적 정의되곤 한다(Boss and Greenberg, 1984).

2)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

가족경계의 모호성은 가족스트레스의 증가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ss, 1987; Boss and Greenberg, 1984). Boss(1977, 1980a)는 전쟁 중 실종된 군인(Missing-in-Action)의 아내가 남편을 여전히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할 때⁴⁾ 그 가족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달리, 전쟁 중 실종된 군인가족의 가족 기능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실종으로 인한 남편의 가족내의 육체적 부재를 정신적 부재로 받아들이는 가족의 경우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oss, 1980a). 즉 정신적 실재여부와 육체적 실재여부의 인식이 일치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가족기능이 높았다는 것이다.

4) Boss는 이것을 정신적 실재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육체적 실재여부와 정신적 실재여부간의 불일치, 즉 가족경계모호성이 가족의 건강과 가족구성원의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가족유형에서 확인되었다. 자녀가 성장하여 집에서 독립한 중년부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경계모호성이 큰⁵⁾ 가족의 아버지에게서 수면장애, 신경과민, 우울 등과 같은 심인성 증상이 높게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oss, Pearce-McCall, and Greenberg, 1987).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실재하지 않은 한 쪽 부모를 아동들이, 혹은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여전히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 부재하는 가족성원은 마치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다른 가족성원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가족성원들의 역할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육체적 부재와 정신적 실재로 인한 가족경계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육체적 실재와 정신적 부재가 짝을 이룬 경계모호성도 있다. 가족이 한 배우자나 한쪽 부모, 혹은 자녀들을 아웃사이더 취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로 요즘 우리 사회의 한 현상으로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아버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에 몰두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아버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그림자처럼 실재가 없는 존재 혹은 아웃사이더로 간주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육체적으로는 실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재함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은 불가능해지면서 가족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3) 가족경계모호성과 재혼가족 기능

결혼의 특성상 가족경계의 모호함은 재혼가족 본연의 내적 경험이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있었다(Fast and Cain, 1966, 김효순,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재혼가족의 체계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초혼의 보편적 체계와는 다른 이러한 체계적 특성이 가족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재혼가족의 가장 커다란 체계적 특성은 초혼가족에 비해 훨씬 다양한 하위체계와 상위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두 가구에 걸쳐 가족상(family picture)을 확대해야 하는 재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체계적 접근에 따르면 재혼가족에는 '최초(primary)'의 가족 하위체계와 '두번째(secondary)'의 가족 하위체계가 있다(Roberts and Price, 1985). '최초'의 가족단위란 전혼이 해체된 후 부양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함으로써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두번째' 가족체계란 비부양 부모가 속한 가족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을 Ahron(1979)은 "이중핵가족 가구(binuclear famil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중핵가족 가구는 재혼가족의 구성원이 동시에 두 개의 가족체계에 속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부모에게는 재혼가족 외부에 친자녀가 있고, 자녀는 두 명의 아버지 혹은 두 명의 어머니를 갖게 되는 재혼의 상황을 의미한다. 부양부모와 함께 재혼가족에 편입된 계자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동시에 '최초'와 '두번째'의 가족에 속하며, 이 두 개의 가족체계 내에서 그 하위체

5) 독립한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개인 자녀체계, 형제자매체계 또한 복수로 속하게 되며, 친족, 조부모체계와 같은 상위체계도 복수의 환경을 갖게 되면서 초혼에 비해 복잡한 체계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재혼가족 외부에 이 가족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비부양부모는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로서의 역할로 인해 재혼생활에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주며,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래되고 미련을 갖고 있는 친족체계는 재혼가족의 기능에 복잡성을 더하게 된다.

또한, 초혼의 경우에는 가족의 상위나 하위체계는 생물학적, 법적으로 정의되고 규정되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성립되어 모든 가족이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반면에, 재혼가족의 경우에는 접촉빈도나 정서적 관계, 개인의 선택 등 주관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재혼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체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주관적 경계정의로 인하여, 재혼가족 체계의 영역은 무한히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한다. Gross(1987)의 연구에서 보듯이, 부모체계안으로 현재 동거하는 부모 외에 비부양부모나 그의 배우자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동거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재혼전 동거했던 한쪽 부모만을 포함시키는 등 체계영역이 개인에 따라, 재혼가족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재혼가족체계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재혼가족의 가족구성원은 '우리 가족은 누구인가', 즉 가족경계가 모호해 지는 것이다. 재혼가족의 가족구성원들은 '우리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적연구들(Berger, 1998; Smart, Neale, and Wade, 2001)에 따르면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범주정의를 가족구성원들, 즉 부모, 아동, 형제들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계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조사한 결과, 부모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인정한 부모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생물학적 부모, 생물학적 관계와 무관하게 현재 동거하고 있는 부모, 생물학적 부모 중 재혼 전 자신과 함께 살았던 한 사람, 생물학적 부모와 현재 동거중인 계부모 등 각기 달랐다(Gross, 1987).⁶⁾

이와 같은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Pasley(1987)의 연구에 따르면, 재혼가족들을 대상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정신적 경계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가리키는 육체적 경계의 모호성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모호한 경계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전혼자녀를 데리고 결혼하였을 때 더욱 그러하였고,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계자녀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높았다. Pasley와 Ihinger-Tallman(1989)는 이보다 한 걸음 진전시켜, 재혼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경계모호성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216명의 재혼가족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가족경계(누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와 육체적 가족경계(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부의 상호일치도로서 가족경계모호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육체적 경계모호성 모두가 계부가정이 가장 낮았고, 남편의 전혼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계모재혼가족이 가장 높았다. Stewart(2005)의 연구에서도 재혼가족의 높은 가족경계모호성은 검증되었으며, 동거

6) Gross(1987)는 이들을 각기 보유(retention), 대체(substitution), 축소(reduction), 첨가(augmentation) 집단이라고 칭하였다. 보유집단은 생물학적 부모만을, 대체집단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를 동거하는 계부모와 대체하여 현재 함께 사는 계부모를, 축소집단은 재혼 전 그들과 함께 살았던 생물학적 부모중의 한 사람만을, 첨가집단은 생물학적 부모들과 적어도 한 계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였다.

하지 않는 계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에서 더 높았고, 반면에 재혼에서 새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자녀의 존재가 재혼해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부부관계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White and Booth, 1985; Booth and Edwards, 1992)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재혼가족 구성원들간에 가족원에 관한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호한 인식은 재혼가족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Fast and Cain, 1966; Whitsett and Land, 1992; Banker and Gaertner, 1998; Fine, Coleman, and Ganong, 1998; Madden-Derdich, Leonard, and Christopher, 1999). 경계의 불명료함이 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초래하고, 또한 계부모와 자녀간의 그리고 부부간의 유대를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utz, 1983). Fine와 Kurdek(1992)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인식불일치는 가족의 적응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만일 가족구성원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족구성원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갖기 쉽다는 것이다. Stewart(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경계모호성이 재혼가족의 배우자간 관계의 질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련성은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김효순(2005)⁷⁾은 '전배우자 자녀들은 나와 친부모 사이에서 방황한다', '내가 새부모 노릇을 하는데 전 배우자가 방해한다', '현 배우자의 전처/전남편은 우리 부부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다' 등 3항목으로 측정된 가족경계모호성이 재혼가족의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재혼가족의 가족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재혼모를 대상으로 해체된 재혼의 특성을 연구한 김연옥(2007)의 질적 연구 결과를 보면,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자녀에 대한 남편의 애정에 대한 강한 거부감, 계자녀들의 재혼모 거부, 남편 전부인 부모들의 간섭과 계자녀와의 밀착된 관계, 재혼모에 대한 남편 형제와 부모들의 거부감 등 가족성원으로 계자녀를 배척하고, 배척당하는 등 체계로서의 가족형태가 불분명할 정도로 경계가 모호한 것이 해체된 재혼가족의 주요 특성임을 밝혀 가족경계모호성과 재혼해체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 경계개념을 중심으로,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족의 혼인특성과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7) 가족경계모호성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불명확함과 그로 인한 역할혼란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서구사회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누가 가족구성원인가'에 대한 인식불일치를 측정한 반면, 김효순(2005)의 연구는 역할혼란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다.

둘째, 재혼가족의 가족기능과 경제모호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재혼가족의 가족경제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2) 조사방법과 표집

본 연구는 서베이 조사설계(survey research design)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재혼가족의 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재혼가족이라 함은 여성, 남성 중 한 쪽 혹은 양자 모두 재혼⁸⁾이면서, 한 쪽 이상에서 전혼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자 표집은 연구대상의 특성상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적용하여, 이혼자·재혼자 인터넷 정보교환카페, 인터넷 베품시장, 서울지역 정보지 교차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의뢰하여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143설문지가 조사되었고, 이중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무응답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응답내용이 outlier가 포함되어 통계수치가 현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조사지를 제외시켜 최종 분석표본수는 125개였다.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척도와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사회조사방법론 훈련을 받은 석사과정학생들에 의한 면접조사와,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과 인터넷 메일을 이용한 개별 자기기입방식 등을 병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일원적 기술통계, ANOVA검증, T검증 등의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혼모의 나이는 40대가 총 56명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50대로 3명(26.4%), 30대가 30명(24.4%), 끝으로 60대 이상이 6명(4.8%)으로 분포되었으며, 평균나이는 41세로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0년 재혼여성 평균나이와 거의 동일하게 드러나 본 연구 표집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8.4%, 고졸이하가 40.8%, 전문대졸이 10.4%, 대졸이상이 30.4%로 드러나 고중퇴나 고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73.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26.4%는 전업주부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참가율 70.4%(통계청, 2011)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직업의 종류는 사무직 28.8%, 판매서비스직 17.6%, 자영업과 기타가 동일하게 8.0%, 기능직이 7.2%, 전문자유직이 3.2%, 경영관리직이 0.8%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직업과 교육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남편의 나이는 40대가 47명으로 37.6%, 다음은 50대로 36.0%, 30대가 13.6%, 끝으로 60대가 12.8%이며, 평균나이는 45세로서 이 또한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1년 재혼남성 평균나이 46세와 한 살 정도의 차이만을 보여 표본의 대표성이 한번 더 확인되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0.4%, 고졸이하가 28.8%, 전문대졸이 13.6%, 마지막으로 전체의 반에 가까운 47.2%가 대졸이상으로서 여성에 비해 고학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무직이 34.4%로 가장 많았

8)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재혼 횟수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척도는 첫 번째 재혼을 전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으며 다음이 자영업 18.4%, 기능직 12.0%, 무직 11.2%, 판매서비스직 8.8%, 경영관리직 5.6%, 전문자유직과 정년후 연금대상자 등의 기타가 각각 4.8% 순이었으며, 무직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60대 이상이 12.8%인 나이분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월소득은 1백만원 미만 6.4%, 2백만원 미만 16.0%, 3백만원 미만 14.4%, 4백만원 미만 19.2%, 5백만원 미만 14.4%, 5백만원 이상이 29.6%로 분포되었다. 월평균소득은 3,086,400원으로서 2011년 가구당 월평균소득 3,740,120원(통계청, 20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3) 주요변수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개념인 경계모호성은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Boss(1980a)의 모호성 개념에 근거하여,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지각을 심리적, 신체적 차원 모두에서 측정하였다. 가족의 신체적 차원에서의 측정은 재혼가정의 모를 대상으로, 본인의 전혼과 현재혼의 가족상황, 그리고 배우자의 전혼과 현재혼의 가족상황을 측정하였다. 가족상황이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성별과 나이, 결혼여부, 동거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심리적 차원의 측정은 재혼가족의 모로 하여금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으로 진정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해당되는 가족을 나열하도록 하였다.

가족경계모호성은 두 차원에서 측정한 자료를 비교하여 심리적 부재와 신체적 부재의 존재여부로 평가하였다. 심리적 부재란 함께 동거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포함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신체적 부재란 현재 함께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재혼여성이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경계를 기준으로, 심리적 부재와 신체적 부재 모두 없는 가족은 가족경계모호성이 없는 것으로, 심리적 부재가 있는 가족은 심리적경계모호성, 신체적 부재가 있는 가족은 신체적경계모호성, 심리적 부재와 신체적 부재 모두 있는 가족은 심리·육체적모호성으로 분류하였다.

재혼가족의 가족기능 측정은 Crosbie-Burnett(1989)이 개발한 재혼가족의 적응척도인 Stepfamily Adjustment Scale(SAS)를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족관계를 고려한 수정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재혼가족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척도로 재혼가족 연구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효순, 2005). 이 척도는 가족행복(family happiness), 가족유대(cohesion), 부부행복(marital happiness) 등의 세 가지 하위개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족행복척도는 본래 8문항이었으나 의미전달이 모호한 한 문항⁹⁾을 제외하고, '나의 가족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와 같이 가족에 대한 불만, 자부심, 행복감, 가족시간, 가족행사참여도 등을 묻는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각 항목은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text{Alpha} = .95$ 이다. 가족유대는 '우리 가족은 가족문제로 걱정하거나

9) 예비조사결과 '나와 자녀와 서로 의견 충돌하는 빈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어려워 제외시켰다.

화하는 일이 있다'와 같이 가족의 정서적 분란, 가족의 동참정도, 친밀도 등을 7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text{Alpha} = .82$ 이다. 부부행복은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와 같이 나에 대한 남편의 신뢰, 성생활만족, 대화, 결혼생활의 만족과 편안함 등을 묻는 10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이 또한 4점 척도로서 부부행복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도록 부호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text{Alpha} = .96$ 이다.

재혼가족의 결혼특성은 양 배우자의 혼인유형, 결혼지속기간, 결혼형태, 전혼자녀유무, 전혼해체사유, 가족동거유형 등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들로 나이,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재혼가족의 혼인특성과 구조적 특성

(1) 재혼가족의 혼인특성

조사대상 가족의 혼인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유형은 여성초혼+남성재혼이 17.6%, 여성재혼+남성초혼이 26.4%, 여성재혼+남성재혼이 56.0%로서,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0년 재혼유형 비율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¹⁰⁾. 재혼인 여성의 전혼해체사유는 이혼이 가장 많아 79.2%였으며 사별이 20.8%로서 이혼여성의 재혼이 보편화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전혼해체후 재혼까지의 기간은 1-5년 미만이 가장 많아 57.8%였으며 5-10년 미만이 29.4%, 10-15년 미만이 5.9%, 15년 이상이 4.9%, 1년 미만이 2.0%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재혼까지의 평균기간은 4.8년이었다.

남편의 전혼해체사유도 이혼이 가장 많아 74.2%, 사별이 25.8%를 차지하였다. 남편이 전혼해체후 재혼까지의 기간은 68.5%가 1-5년 미만이었으며 5-10년 미만이 20.2%로 2위, 1년 미만과 10년 이상 동일하게 5.6%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재혼까지의 평균기간은 3.8년으로서 전혼해체후 재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여성의 4.8년에 비해 1년 정도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결혼의 지속기간은 1-5년 사이가 가장 많아 40.8%를 점하였으며 그 다음이 25.6%의 5-10년, 16.8%의 15년 이상 순이었고,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7.6년이었다. 결혼형태는 자유혼이 54.4%로 40.8%인 중매혼 보다 많았다. 혼전교제기간은 압도적으로 1-5년 미만이 71.8%를 점하였으며, 다음이 1년 미만으로 21.8%, 5-10년 미만이 4.8%, 10년 이상이 1.6%의 순이었다. 평균 교제기간은 1.9년이었다.

10) 우리나라 2010년 재혼유형은 여성초혼+남성재혼이 19.5%, 여성재혼+남성초혼이 25.7%, 여성재혼+남성재혼이 54.8%이다(통계청, 2011).

〈표 1〉 재혼가족의 혼인특성

| 항목 | 구분 | 빈도(%) | 항목 | 구분 | 빈도(%) |
|--------------------------------|-----------|------------|--------------------------|---------|------------|
| 혼인유형 | 여성초혼+남성재혼 | 22(17.6) | 결혼형태 | 중매혼 | 51(40.8) |
| | 여성재혼+남성초혼 | 33(26.4) | | 자유혼 | 68(54.4) |
| | 여성재혼+남성재혼 | 70(56.0) | | 절충혼 | 6(4.8) |
| | 계 | 125(100.0) | | 계 | 125(100.0) |
| 현결혼 지속기간 | 1년미만 | 3(2.4) | 혼전 교제기간 | 1년미만 | 27(21.8) |
| | 1-5년미만 | 51(40.8) | | 1-5년미만 | 89(71.8) |
| | 5-10년미만 | 32(25.6) | | 5-10년미만 | 6(4.8) |
| | 10-15년미만 | 18(14.4) | | 10년이상 | 2(1.6) |
| | 15년 이상 | 21(16.8) | | 계 | 124(100.0) |
| | 계 | 125(100.0) | | 평균 | 1.9년 |
| | 평균 | 7.06년 | | | |
| 전혼해체사유 (재혼여성) | 사별 | 21(20.8) | 전혼해체사유 (남편) | 사별 | 23(25.8) |
| | 이혼 | 80(79.2) | | 이혼 | 66(74.2) |
| | 계 | 101(100.0) | | 계 | 89(100.0) |
| 전혼해체후 재혼까지의 기간 (재혼여성) | 1년미만 | 2(2.0) | 전혼해체후 재혼까지의 기간(남편) | 1년미만 | 5(5.6) |
| | 1-5년미만 | 59(57.8) | | 1-5년미만 | 61(68.5) |
| | 5-10년미만 | 30(29.4) | | 5-10년미만 | 18(20.2) |
| | 15년미만 | 6(5.9) | | 10년이상 | 5(5.6) |
| | 15년이상 | 5(4.9) | | 계 | 89 |
| | 계 | 102(100.0) | | 평균 | 3.8년 |
| | 평균 | 4.8년 | | | |

(2) 재혼가족의 구조적 특성

재혼가족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현재혼, 여성전혼, 남성전혼 등의 자녀들 중 동거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재혼가족유형을 분류한 결과 매우 다양한 동거유형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부부와 현재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전체의 26.2%, 다음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25.4%, 부부+여성전혼자녀 15.6%, 부부+여성전혼자녀+남성전혼자녀 11.5%, 부부+남성전혼자녀 10.7%, 부부+현재혼자녀+남성전혼자녀가족이 6.6%, 부부+현재혼자녀+여성전혼자녀 3.3%, 끝으로 부부+현재혼자녀+여성전혼자녀+남성전혼자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혼에서의 자녀유무를 보면, 조사대상자중 재혼인 여성의 75.7%가 전혼에서 자녀가 있었고, 이중 48.8%가 현재 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남성재혼자의 경우 80.2%가 전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으며 이중 35.6%가 현재 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여성재혼자가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이 남성재혼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친권을 우선 인정하는 우리나라 문화특성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수의 평균을 보면 현재혼자녀는 0.5명, 여성전혼자녀는 1.0, 남성전혼자녀는 1.0으로 집계되었다.

〈표 2〉 재혼가족의 구조적 특성

| 항목 | 구 | 분 | 빈 | 도 | 계 |
|----------------------|--------|------------------------|-----|-------|------------|
| 동거 기준 가족 유형 | | 부부 | 31(| 25.4) | 120(100.0) |
| | | 부부+현재혼자녀 | 32(| 26.2) | |
| | | 부부+현재혼자녀+여성전혼자녀 | 4(| 3.3) | |
| | | 부부+현재혼자녀+남성전혼자녀 | 8(| 6.6) | |
| | | 부부+현재혼자녀+여성전혼자녀+남성전혼자녀 | 1(| 0.8) | |
| | | 부부+여성전혼자녀+남성전혼자녀 | 14(| 11.5) | |
| | | 부부+여성전혼자녀 | 19(| 15.6) | |
| 비동거 미혼 자녀 | | 부부+남성전혼자녀 | 13(| 10.7) | 62(100.0) |
| | | 여성전혼자녀 | 31(| 50.0) | |
| | | 남성전혼자녀 | 22(| 35.5) | |
| | | 여성전혼자녀+남성전혼자녀 | 8(| 12.9) | |
| 전혼 자녀 유무 | 여성 | 있다 | 78(| 75.7) | |
| | | 없다 | 25(| 24.4) | |
| | 남성 | 있다 | 73(| 80.2) | |
| | | 없다 | 18(| 19.8) | |
| 자녀수 | 현재혼자녀 | 남 | 38(| 55.9) | 68(100.0) |
| | | 여 | 30(| 44.1) | |
| | 여성전혼자녀 | 남 | 60(| 50.0) | 120(100.0) |
| | | 여 | 60(| 50.0) | |
| | 남성전혼자녀 | 남 | 57(| 45.6) | 125(100.0) |
| | | 여 | 68(| 54.4) | |

2) 재혼가족의 가족기능과 가족경계모호성

조사대상자 가족의 가족기능 정도를 재혼여성이 느끼는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등을 통해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재혼가족의 가족기능

| | 평균 | s.d | n |
|-------|-----|-----|-----|
| 가족행복도 | 2.8 | .69 | 125 |
| 가족유대감 | 2.6 | .52 | 125 |
| 부부행복도 | 2.7 | .76 | 125 |
| 가족기능 | 2.7 | .60 | 125 |

가족기능의 세 개의 하위척도의 평균값은 긍정값 4점에서 부정값 1점의 분포에서 가족행복도가 2.8 점, 가족유대감이 2.6점, 부부행복도가 2.7점으로서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 기운 정도의, 그렇지만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가족기능을 보여주었다. 가족기능과 혼인유형, 동거가족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동거가족과 마음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가족 간의 일치여부로 측정한 가족경계모호성과 심리적, 육체적 부재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가족경계모호성과 부재가족유형

| 구 분 | | 빈도 | % |
|---|---------------------|------------|----------------|
| 가족경계모호성 | 경계모호성없음 (배제가족없음) | 75 (50) | 67.6 (45.0) |
| | (배제가족있음) | (25) | (22.5) |
| | 심리적경계모호성 | 11 | 9.9 |
| | 육체적경계모호성 | 22 | 19.8 |
| | 심리·육체적경계모호성 | 3 | 2.7 |
| 계 | | 111 | 99.9 |
| 배제되는 가족 | 여성전혼자녀 | 11 | 37.9 |
| | 남성전혼자녀 | 18 | 62.1 |
| | 계(복수응답처리) | 29 | 100.0 |
| 심리적부재자 | 여성전혼자녀 | 4 | 22.2 |
| | 남성전혼자녀 | 6 | 33.3 |
| | 현재남편 | 8 | 44.4 |
| | 계(복수응답처리) | 18 | 99.9 |
| 육체적부재자 | 여성전혼자녀 | 24 | 96.0 |
| | 남성전혼자녀 | 1 | 4.0 |
| | 계 | 25 | 100.0 |
| 심리적·육체적 실재가 일치되는 가족의 경우 배제되는 가족유무 | 없다 | 50 | 66.7 |
| | 있다 | 25 | 33.3 |
| | 계 | 78 | 100.0 |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모두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응답하여 심리적·육체적 실재가 일치하는 가족, 즉 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 비율은 67.6%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가족성원으로 여기는 육체적 부재가족 19.8%, 함께 살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리적 부재가족 9.9%, 심리적 부재와 육체적 부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족이 2.7%, 총 32.4%가 경계모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경계모호성이 없는 67.6%중 가족 밖에 배제되는 가족, 즉 동거하지도 않고 마음의 가족으로도 간주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22.5%, 배제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그 두 배인 45.0%로 드러났다.

함께 동거하지만 심리적으로 가족으로 취급되지 않는 심리적 부재자는 현재의 남편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전혼자녀 33.3%, 여성전혼자녀 22.2%로 집계되었다. 숫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으나, 남편의 심리적 부재는 최근 빈번히 거론되는 가족관계의 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여성전혼자녀보다 남성전혼자녀의 심리적 부재는 재혼가족의 모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전혼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동거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가족으로 간주하는 육체적 부재자의 96.0%가 여성전혼자녀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3)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

재혼가족의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가족경계모호성에 따른 가족기능 ANOVA검증결과

| 가족기능 | 경계모호성 | 평균 | s.d | n | F 값 | 유의확률 |
|-------|-------------|-----|-----|----|------|-------|
| 가족행복도 | 경계모호성없음 | 3.0 | .53 | 75 | 18.0 | .000* |
| | 심리적경계모호성 | 2.0 | .73 | 11 | | |
| | 육체적경계모호성 | 2.2 | .62 | 22 | | |
| | 심리·육체적경계모호성 | 2.7 | .71 | 3 | | |
| 가족유대감 | 경계모호성없음 | 2.8 | .40 | 75 | 18.6 | .000* |
| | 심리적경계모호성 | 2.2 | .47 | 11 | | |
| | 육체적경계모호성 | 2.1 | .56 | 22 | | |
| | 심리·육체적경계모호성 | 2.6 | .51 | 3 | | |
| 부부행복도 | 경계모호성없음 | 3.1 | .50 | 75 | 27.8 | .000* |
| | 심리적경계모호성 | 2.0 | .75 | 11 | | |
| | 육체적경계모호성 | 2.0 | .60 | 22 | | |
| | 심리·육체적경계모호성 | 2.6 | .71 | 3 | | |
| 가족기능 | 경계모호성없음 | 3.0 | .44 | 75 | 26.7 | .000* |
| | 심리적경계모호성 | 2.1 | .59 | 11 | | |
| | 육체적경계모호성 | 2.6 | .52 | 22 | | |
| | 심리·육체적경계모호성 | 2.7 | .61 | 3 | | |

* $p < .05$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기능의 하위영역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모두 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에게서 높은 점수로, 심리적 부재, 육체적 부재 등 경계모호성이 낮은 가족에게서 낮은 점수로 나타나 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의 가족기능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도 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리적 모호성이 육체적 모호성보다 가족기능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육체적 모호성보다 심리적 모호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Pasley, Kay and Ihinger-Tallman, 1989)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가족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은 동거가족 외에는 다른 가족이 가족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가족이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도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양자 모두 가족경계모호성은 없지만, 실제 가족현상은 서로 달라 이들 간

에 가족기능 차이는 없는지 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가족기능에 대한 배제가족 유무간의 차이비교

| 가족기능 | 배제가족 유무 | 평균 | s.d | n | T 값 | 유의확률 |
|-------|---------|-----|-----|----|-----|------|
| 가족행복도 | 없다 | 3.0 | .54 | 50 | .56 | .575 |
| | 있다 | 2.9 | .53 | 25 | | |
| 가족유대감 | 없다 | 2.9 | .43 | 50 | .67 | .508 |
| | 있다 | 2.8 | .34 | 25 | | |
| 부부행복도 | 없다 | 3.1 | .52 | 50 | .59 | .560 |
| | 있다 | 3.0 | .46 | 25 | | |
| 가족기능 | 없다 | 3.0 | .45 | 50 | .66 | .512 |
| | 있다 | 2.9 | .40 | 25 | | |

$p < .05$

이 표에 따르면 배제되는 가족의 유무에 따른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의 평균값은 두 집단에서 거의 동일한 값을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제가족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가족기능의 평균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라고 보겠다. 즉 배제가족의 유무 보다는 가족성원의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가 일치 되는 것이 가족기능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우리 사회에서 재혼가족은 더 이상 예외적 가족이 아닌 매우 '흔한' 가족유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재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한 단계이고, 주제 또한 재혼가족의 문제점, 역할, 적응 등 주로 기능적 측면에 치중해 온 경향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재혼가족을 경계라는 구조적 관점에 기초하여 재혼가족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 내용과 그 의미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재혼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도, 숨길 필요도 없는 가족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 해에 결혼하는 5쌍 중 1쌍 이상이 재혼인 결혼향상은 계속 유지되었고, 초혼해체 사유의 대부분이 이혼으로써 '이혼후 재혼'이 보편적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초혼자와 재혼하는 여성비율이 여성초혼자와 결혼하는 남성비율보다 앞서고, 여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이 남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보다 앞선 조사결과는 재혼의 숫적 증가뿐만 아니라 재혼에 관한 사회문화적 태도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재혼은 여전히 초혼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일관된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연구결과 긍정적 4점에서 부정적 1점의 측정범주에서 2.7

점을 보여주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결과를 보여주었다.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일치여부로 측정한 가족경계모호성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67.6%가 경계모호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32.4%가 심리적, 육체적, 혹은 양쪽 모두의 부재가족이 있어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재혼 부부의 69.7%가 가족경계모호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Pasley(1987)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수 치였다. 가족경계모호성은 재혼유형이나 동거가족유형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연구들이 모호한 가족경계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되었음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검증되었다. 세 개의 가족기능 하위개념, 즉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모두 가족경계모호성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재혼가족의 기능에는 육체적 모호성보다 심리적 모호성, 즉 함께 살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의 존재가 가족기능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경계모호성은 재혼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함께 살지 않는 미혼자녀의 유무는 가족기능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함께 데리고 살지 않는 전혼자녀가 있어도 마음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에는 재혼여성이 느끼는 가족행복감,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첫째, 함께 거주하지 않는 전혼자녀는 함께 사는 친자녀나 재혼가족의 새로운 자녀로 인해 쉽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재혼여성은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자녀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 새로 형성된 재혼가정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전혼자녀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Pasley, Kay and Ihinger-Tallman, 1989).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혼가족의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경계개념이 사회복지사들의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개입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재혼가족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재혼가족의 복잡성과 문제점이 '경계유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그 개념을 실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성원들에게 경계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경계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원들의 노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족복지전문가들은 가계도의 사용, 교육, 가족경계에 관한 명확한 지적 등을 권하고 있다.

둘째, 재혼가족 대상 심리사회적 개입이나 재혼가족교육프로그램에서 경계개념을 비롯한 구조적 관점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재혼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 등 재혼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현상적으로는 초혼가족의 그것과 다르지 않지만, 근원적으로는 초혼가족과는 전적으로 다른 재혼의 가족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이혼후 재혼'유형의 보편화, 초혼남성+재혼여성의 혼인증가와 같은 재혼유형의 변화는 초혼가족을 전제로 하는 가족이념이나 정책의 기초가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만 보더라도,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자체가 초혼핵가족을 건강가족으로 전제하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재혼가족을 또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족현상에 관

한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혼의 상세한 부분까지 통계를 내는 미국의 인구센서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혼율과 재혼유형 이외의 세부적 자료는 집계하지 않는 실정이다. 재혼가족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상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본 연구는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 등을 재혼가족의母的 인식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등은 재혼여성의 인식에 한정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재혼가족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부부, 혹은 가족전체를 조사 단위로 하는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사 단위를 달리하여, 그 각각 구성원들의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인식의 일치여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연옥. 1999. "재혼가정 내 모의 역할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41-62.
- 김연옥. 2002. "재혼가정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319-342.
- 김연옥. 2007.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171-195.
- 김효순. 2005. "재혼가족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계부모와 청소년 계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순. 2006. "재혼가족의 양육태도 유형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 191-230.
- 김효순·엄명용. 2006. "재혼가족의 가족결속에 영향 미치는 요인연구: 역할긴장 변수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 127-155.
- 김효순·하춘광. 2010.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 67-101.
- 김효순·하춘광. 2011.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새부모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3: 137-168.
- 박태영·김태한. 2010. "재혼가족의 가족갈등 사례분석". 『한국가정관리학』 4: 15-28.
- 손병덕. 2005. "재혼가정·일반가정 아동의 개인·양육 특성들이 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연구". 『아동권리연구』 9: 1-22.
- 임춘희. 1996. "재혼가족 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춘희·정옥분. 1997. "초혼계모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17: 73-102.
- 통계청. 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 통계청. 2011. 『2010년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2012. 『2011년 가계동향조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 『2011년도 상담통계』.

- Ahron, C. 1979. "The Binuclear Family: Two Households, One Family." *Alternative Lifestyles* 2: 499-515.
- Banker, B. S., and L. Gaertner. 1998. "Achieving Stepfamily Harmony: An Intergroup-relations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310-325.
- Berger, R. 1998. *Stepfamilies :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New York: Haworth.
- Booth, A., and John N. Edwards. 1992. "Starting over: Why Remarriage Are More Unstabl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179-194.
- Boss, P. 1977. "A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Father Presence in Families Experiencing Ambiguity of Bounda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 141-151.
- Boss(a), P. 1980. "The Relationship of Wife' Sex Role Perceptions, Psychological Father Presence, and Functioning in the Ambiguous Father-absent MIA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41-549.
- Boss(b), P. 1980.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Boundary Changes Across the Lifespan." *Family Relations* 29: 445-450.
- Boss, P. 1987. "Family Stress." pp. 695-724.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edited by M. B. Sussman and S. K. Steinmetz. New York: Plenum.
- Boss, P., and J. Greenberg. 1984. "Family Boundary Ambiguity: A New Variable in Family Stress Theory." *Family Process* 23: 535-546.
- Boss, P., D. Pearce-McCall, and J. Greenberg. 1987. "Normative Loss in Mid-life Families: Rural, Urban, and Gender Differences." *Family Relations* 36: 437-443.
- Crosbie-Burnett, M. 1989. "Application of Family Stress Theory of Remarriage: A Model for Assessing and Helping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38: 323-331.
- Fast, I., and C. Cain. 1966. "The Step-parent Role: Potential for Disturbances in Family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26: 485-491.
- Fine, M. A., M. Coleman, and L. H. Ganong. 1998. "Consistency in Perceptions of the Step-Parent Role among Step-parents, Parents and Stepchildr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810-828.
- Fine, M. A., and L. A. Kurdek. 1992.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Stepfather and Step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25-736.
- Gehart, D. R., and Amy R. Tuttle. 2003. *Theory-Based Treatment Planning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ross, P. E. 1987. "Defining Postdivorce Remarriage Families: A Typology Ba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ldren." *Journal of Divorce* 10: 205-217.
- Jacobson, D. 1987. "Family Type, Visiting, and Children's Behavior in the Stepfamily A Linked Family System." pp. 257-272. in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edited by K. Pasley and M. Ihinger-Tallman. New York: Guilford Press.
- Lutz, P. 1983. "The stepfamily: An Adolescen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32: 367-375.
- Madden-Derdich, D. A., S. A. Leonard, and F. S. Christopher, 1999. "Boundary Ambiguity and Coparental Conflict after Divorce: An Empirical Test of a Family Systems Model of the Divorce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88-598.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essinger, L. 1976. "Remarriage between Divorced People with Children from Previous Marriage A Proposal for Preparation for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2: 193-200.
- National Healthy Marriage Resource Center. 2009. *Remarriag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 Pasley, B. K. 1987. "Family Boundary Ambiguity: Perception of Adult Stepfamily Members." pp. 206-224. in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edited by K. Pasley and M. Ihinger-Tallman. New York: Guilford Press.
- Pasley, B. K., and Marilyn Ihinger-Tallman. 1989. "Boundary Ambiguity in Remarriage: Does Ambiguity Differentiate Degree of Marit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Family Relations* 38: 46-52.
- Roberts, T., and S. Price. 1985. "A System Analysis of the Remarriage Process: Implications for the Clinician." *Journal of Divorce* 9(2): 1-25.
- Smart, C., B. Neale, and A. Wade. 2001.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hood: Families and Divorce*. Malden, MA: Blackwell.
- Stewart, S. D. 2005. "Boundary Ambiguity in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6: 1002-1029.
- U.S. Bureau of the Census. 2006.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122nd e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lker, K., and L. Messinger. 1979. "Remarriage after Divorce Dissolution and Reconstruction on Family Boundaries." *Family Process* 18: 185-192.
- White, L. K., and A. Booth, 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689-698.
- Whitsett, D., and H. Land. 1992. "The Development of a Role Strain Index for Stepparent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3: 14-22.

Boundary Ambiguity and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Kim, Yoon-Ok
(University of Seoul)

Remarriages constitute an increasing proportion of all marriage in Korea. In 2010, 21.9% of marriage were remarriages for one or both partners. In spite of such increasing of remarriage, not much attentions were given the issues of remarriage in the academic circle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remarriage, the family structure in remarria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undary ambiguity and the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Although boundary ambiguity is believed to be more problematic for remarriage families than first-marriage families and as such has been the topic of research in the U.S.A and other countrie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is topic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degree of boundary ambiguity of 125 samples of remarried women and their family functioning. Also,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undary ambiguity and the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This study conceptualized boundary ambiguity as an incongruence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esence or absence of family member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67.6%) were categorized as having both no psychological and no physical ambiguity. 19.8% of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as having physical ambiguity, 9.9% as having psychological ambiguity, and 2.7% as having bo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ambigu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were found among four groups having different type of boundary ambiguity.

Key words: boundary ambiguity, remarriage,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논문 접수일 : 12. 04. 30, 심사일 : 12. 05. 07, 게재 확정일 : 12. 06. 29]